

범정부 협력 강화로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차단

- 불법사금융 특별단속, 세무·재산조사 등을 통해 불법이익은 철저히 박탈
- 피해자의 정신적·육체적·금전적 고통 배상 및 피해자보호 노력 강화
 - ▶ '23년에도 지속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전년대비 검거건수·인원(19%·6%), 구속인원(3배) 증가
 - ▶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·자금출처조사 등에 착수하여 431억원 추정
 - ▶ 「스토킹처벌법」에 의한 접근금지 적용,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구제조치 대폭 강화
 - ▶ 향후 특별단속 및 세무조사 등을 지속하고,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, 온라인 불법사금융 유통 차단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협력 확대 추진

□ 정부는 '24.2.20(화)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「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」를 개최하여, '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.

* (참석) 국무조정실장(주재)·과학기술정보통신부·법무부·방송통신위원회·금융위원회·국세청·대검찰청·경찰청·금융감독원 등

- 그동안 정부는 '22.8월에 출범한 「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」를 중심으로, 고금리 상황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해 왔으며,
- 특히,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「불법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」 이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하여, '불법사금융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강화 방안' 등을 집중 논의해왔다.

1 20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실적

□ '23년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, 검거건수(+19%)·검거인원(+6%)·구속인원(약 3배) 및 범죄수익 보전 금액(총 62억원, +44%)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.

* (검거건수 인원) ^(22년)1,179건 · 2,073명 → ^(23년)1,404건 · 2,195명, (구속인원) ^(22년)22명 → ^(23년)67명

- 특히,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대면·온라인화되어, 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전국 단위 역량을 결집하여 ▲성착취 등 악질적 추심 범죄, ▲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 활용한 조직을 검거하였다.

< 주요 검거사례(경찰청) >

- ▶ (성착취 추심) 피해자 2,415명에게 연이율 10,507%로 5억 6천만원을 대출하고, 연체 시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 나체사진·자위 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 검거(5명 구속)
- ▶ (휴대폰깡) 휴대폰깡(내구제대출)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97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 461대를 개통하고 보이스피싱·마약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여 8억 4천만원 수취한 대포조직 총책 등 57명 검거(4명 구속)

②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주요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

- 관계기관은 「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」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업하여,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왔으며, '23.11월 TF에서 논의된 주요 후속 조치 과제의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다.

- (세무조사 등)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·자금출처조사·재산추적조사(163건 1차 전국동시조사 착수, '23.11.30.)을 통해 431억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하였다.
 - 한편, 유관기관 협력,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(錢主)·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여 금일('24.2.20일)부터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.(국세청)

< 세무조사 사례(국세청) >

- ▶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불법이익을 은닉(자녀명의 법인 설립, 회계조작으로 법인자금 유출)한 전주(錢主)를 적발하여 수십억원 추징 및 범칙처분

- (피해자보호 강화)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「스토킹처벌법」을 적용하여 잠정조치(접근금지 등)를 집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다.(경찰청)

< 잠정조치 사례(경찰청) >

- ▶ 피해자에게 250만 원 상당을 빌려줬으나 피해자가 변제하지 않자, 피해자의 딸 집으로 닭 머리 2개와 협박성 편지를 상자에 넣어 배송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 불법 채권추심 ⇒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

- (피해구제 강화)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금년 중 ①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* 소송 대리(금감원 등), ②채무자대리인 지원** 확대(금융위 등)도 추진키로 하였다.

* 「민법」 제103조(반사회적 법률행위) 규정을 적용하여,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추진

** 불법 채권추심피해(우려)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(연 20%)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.

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(채권추심 대응)·소송지원 등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
† 사업 예산 규모(억원)/지원건수(건): ('21) 6.04 / 4,841→ ('22) 11.44 / 4,510→ ('23) 8.86 / 3,249 → ('24) 12.55

< 무효화 소송 추진 사례(금감원) >

- ▶ 대출계약 체결 시 **지인·가족의 연락처 제공을** 요구하고, 원리금(이자율 최대 연 7,300%)을 연체하자 **가족 등에게 폭언·협박을 통한 불법추심 및 직장**에 관련 사실을 유포
- ▶ 대출계약 체결시 **가족·직장·지인의 연락처와 친척·지인등의 인스타그램 계정을** 요구하고, 원리금(이자율 최대 연 4,562%)를 연체하자, 과거에 타 대부업체를 통해 제공된 바 있는 **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족·친구·지인 등에게 유포**

- (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제정(금융위)을 통해, 개인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 제한 및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였다. ('23.12월 국회 본회의 통과, '24.10월 시행 예정)

<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(금융위) >

- ▶ **(이자제한)** 연체이자 제한 상각채권 양도시 이자 면제 등 연체발생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 제한
- ▶ **(채무조정)**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안내 의무화 등 금융회사-채무자간 자율적인 채무조정 활성화
- ▶ **(추심제한)** 채무조정중인 채권 등 추심금지, 추심횟수 제한(주7회↓), 추심위탁 제한, 채권 매입시 과다차입 제한 등

- 한편, 이날 TF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수단이 **온라인을 중심으로**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으며, **대포폰대포통장의 사용으로 단속적발 및 처벌하기** 어려워 **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**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.

- 이에 따라, 관계기관은 **온라인(포털, 카페, SNS 등)을 기반으로 정부 지원 사칭 등 불법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 통로로** 활용되는 행위에 대하여 **관리·감독을 강화**하기로 하였다.

- 우선, 인공지능(AI) 기술 등을 활용하여 불법광고 등에 대한 **감시를 강화**하고, 온라인상 불법대부광고 및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대포폰 등을 보다 **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방안**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.

- 아울러,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**불법대부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** 자정 노력을 **강화해 줄 것을** 요청하기로 하였다.

- 또한,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약탈 범죄는 **강력히 처벌**하고 불법 이익은 **남김없이 환수**한다는 원칙에 따라, 관련 법률·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검토·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.

- 서민·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하여 **검찰의 사건 처리기준(구속 및 구형기준) 상향 방안**을 검토하는 한편,

- 불법대부광고 및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.

□ 오늘 회의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“고금리·고물가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불법사금융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”고 하면서,

○ “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차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” 하였다.

□ 「불법사금융 척결 TF」에 참여하는 관계부처 및 기관은 “불법사금융 특별 근절기간(~'24.6월)” 중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‘신고·제보 및 단속 - 처벌 강화·범죄이익 환수 - 피해구제 및 예방’ 등 전 단계에 걸쳐,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성보경 (044-200-2190)
		담당자	사무관	이경민 (044-200-2192)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	책임자	과 장	이정순 (044-202-6650)
		담당자	사무관	김미애 (044-202-6651)
	법무부 형사기획과	책임자	과 장	임세진 (02-2110-3269)
		담당자	검 사	문호섭 (02-2110-3271)
	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	책임자	과 장	김우석 (02-2110-1560)
		담당자	사무관	박상현 (02-2110-1567)
<공동>	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	책임자	과 장	전수한 (02-2100-2510)
		담당자	사무관	남진호 (02-2100-2523)
<공동>	국세청 조사2과	책임자	과 장	이법진 (044-204-3601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수 (044-204-3617)
	대검찰청 형사3과	책임자	과 장	김지용 (02-3480-2853)
		담당자	검 사	오승환 (02-3480-2906)
<공동>	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	책임자	총 경	강태영 (02-3150-2037)
		담당자	경 정	유지훈 (02-3150-2763)
<공동>	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	책임자	국 장	홍석린 (02-3145-8270)
		담당자	팀 장	박재민 (02-3145-8129)